되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36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이정문·문진석·황운하

김윤덕 · 김원이 · 송갑석

김철민 · 민형배 · 이용빈

안민석 · 신동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8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·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보상체계의 마련)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전문인력의 양성) ①
	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
	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
	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	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
	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・연
	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
	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사무
	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제18조(보상체계의 마련) ① 정부
	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
	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
	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
	록 관련 시책을 수립・추진하
	여야 한다.
	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
	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, 연구
	기관,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
	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